

「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2012. 6. 22.(금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김영주 의원 외 6명

나. 발의일자 : 2012년 6월 4일

다. 회부일자 : 2012년 6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2012년 6월 19일

(제3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 : 김영주 의원)

가. 제안이유

『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,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,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,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』의 개정(2012.2.27)에 따라 “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 진흥재단”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"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" 설치 및 운영 지원
- "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"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한 행·재정적 협조 및 지원
- "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" 설치·운영과 대회의 준비·운영에 필요한 행·재정적 협조 및 지원(안 제2

조제1항)

○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 삭제

→ 제2조제2항의 “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 진흥재단”을 통한 지원을 삭제

3. 검토보고 요지

(행정문화전문위원 : 연병호)

금번 개정조례안은 『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,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,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,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』의 개정(2012.2.27)에 따라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조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하기 위하여,

"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"의 설치·운영에 대한 행·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, “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 진흥재단”을 통한 지원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제2항을 삭제한다.

-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설치·운영과 대회의 준비·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협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행·재정적 지원 등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행·재정적 협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 도지사는 경기시설과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(이하 “대회”라 한다)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위원회가 속한 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 진흥재단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 <p>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	<p>제2조(행·재정적 지원 등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설치·운영과 대회의 준비·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협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(삭제)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 <p>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

관계법령 발췌

-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,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,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,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

제4조(국가 등의 지원) ① 조직위원회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·법인·단체 등에게 행정적·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·운영과 대회의 준비·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